

■ 여권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2. 10.>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제39조 관련)

유형	구분		수수료		수수료 중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
	종류	유효기간	국내	재외공관	
1. 전자여권	가. 복수여권	5년 초과	26면: 37,000원	26면: 37달러	26면: 8,140원
		10년 이내	58면: 40,000원	58면: 40달러	58면: 8,800원
		5년	26면: 32,000원	26면: 32달러	26면: 7,040원
			58면: 35,000원	58면: 35달러	58면: 7,700원
	5년 미만	17,000원	17달러	3,740원	
나. 단수여권	1년 이내	17,000원	17달러	3,740원	
2.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50,000원	50달러	11,000원
3. 기타	가. 여행증명서		25,000원	25달러	5,500원
	나.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7,000원	27달러	5,940원
	다. 기재사항 변경		5,000원	5달러	1,100원
	라. 여권 사실증명		1,000원	1달러	220원

비고

- 위 표 제1호에서 “전자여권”이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여 발급되는 여권을 말한다.
- 위 표 제3호나목에서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이란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발급하는 일반여권을 말한다.
- 위 표 제3호라목에서 “여권 사실증명”이란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 여권의 실효확인 및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여권정보증명서를 말한다.
- 위 표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긴급여권 발급 시 여행 목적이 발급지 국가 외에서 체류 중인 친족의 사망,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 등 인도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

준을 적용한다.

수수료		수수료 중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
국내	재외공관	
17,000원	17달러	3,740원

5. 위 표 제3호라목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 또는 같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 사실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